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463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지방세본법 내용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6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지방세본법에 따른 자치법규 구성

분법 (3개법)		자치법규
지방세기본법 (제정)	➡	시세 기본조례 (제정) 시세 기본 부과징수규칙 (제정)
지방세법 (전부개정)	➡	시세 조례 (전부개정) 시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2. 주요내용

○ **총칙분야를 기본조례로 분리**

- 현행 시세조례 중 총칙분야는 시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여 제정(제천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

○ **세목체계 간소화에 따른 개편사항 반영(8개→5개)**

- 재산세와 병기되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
- 유류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행세는 자동차세와 통합
-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과세하는 도축세는 폐지

※ 세목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3. 의안전문 : 붙임

4. 기타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9. 28 ~2010 . 10 . 28 (20일간)

다. 제 11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 원안가결

5.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제천시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제천시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7,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시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0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목과 용어) 이 조례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제천시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제천시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0.3.12> 1. 주민세 2.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담배소비세 7. 도축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삭제 2010.3.12>	<삭제>
제4조(과세면제 등에 의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삭제>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삭제>
제 2 절 납세자 권리헌장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등)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7조(수정신고) ①시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삭제>

현 행	개 정 안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이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7. 14>	<삭제>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5. 14>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세관련 6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 12. 30> 1. 시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6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시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5. 14> ④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 11. 25> ②삭제 <개정 2000. 3. 20> ③시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3. 20> ④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시세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3. 20>	<삭제>
제9조의2(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시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 11. 25>	<삭제>
제 3 절 부과·징수 제10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반송고지서 및 체납고지서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시 사무의위임 조례에 정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2.20, 2007. 1. 26>	<삭제>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시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을 제외	<삭제>

현 행	개 정 안
한다)이 2,0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00. 12. 30, 2006. 7. 14>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삭제>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삭제>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삭제 <2001. 5. 14>	<삭제>
제15조(납부된 징수금의 과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삭제>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송달수수료 등)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시장이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7. 16>	<삭제>
제19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삭제>
제 2 장 보 통 세 제 1 절 균 등 분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3.12> ②<삭제 2010.3.12>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삭제>
제19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조례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3.12>	<삭제>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10.3.12>	<삭제>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7,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 인
<table>
<tr><th>구분</th><th>세액</th></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500,000원</td></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350,000원</td></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200,000원</td></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100,000원</td></tr>
<tr><td>그 밖의 법인</td><td>50,000원</td></tr>
</table>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당 25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신설 2010.3.12>
</td><td>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7,0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table>
<tr><th>구분</th><th>세액</th></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500,000원</td></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350,000원</td></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200,000원</td></tr>
<tr><td>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td><td>100,000원</td></tr>
<tr><td>그 밖의 법인</td><td>50,000원</td></tr>
</table>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td></tr>
<tr><td>제20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총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24</td><td>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총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조(신고 및 납부 등)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본조신설 2010.3.12>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1절 지방소득세<신설 2010.3.12>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2>	제4장 지방소득세 <삭제>
제1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본조신설 2010.3.12>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20조의5(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0조의2(신고의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0.3.12>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 30, 2004. 7. 16, 2010.3.12> ②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2000. 3. 20, 2004. 7. 16, 2010.3.12>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2000. 3. 20>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3. 20, 2004. 7. 16, 2010.3.12> ④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0. 3. 20, 개정 2004. 7. 16, 2010.3.12>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분·소득세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 7. 14, 2010.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0.3.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2조의2(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0, 개정 2010.3.12>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신설 2000. 3. 20, 개정 2010.3.12>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8, 2010.3.12>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3. 20, 개정 2010.3.12>	
제 2 절 재 산 세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 4. 1>	<삭제>
제24조(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	<삭제>

현 행	개 정 안
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 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 4. 1]	
제25조(삭제) <삭제 2006. 7. 14>	
제26조(종합합산과세대상)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4. 1>	제13조(종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한다.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4. 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표 1]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표 2]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표 1]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표 2]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외의 주택<전문개정 2009.5.29>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td><td>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table><tr><th>과세표준</th><th>세 율</th></tr><tr><td>6천만원 이하</td><td>1,000분의 1</td></tr><tr><td>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td>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td></tr><tr><td>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td><td>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td></tr><tr><td>3억원 초과</td><td>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td></tr></table>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td></tr>
<tr><td>제27조의2(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5. 4. 1]</td><td><삭제></td></tr>
<tr><td>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td><td>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 7. 14>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05. 4. 1]	
제21조(과세표준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제천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 4. 1>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신설 2005. 4. 1>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 4. 1>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 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4. 1>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개정 2005. 4. 1>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은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illegible])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5. 건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개정 2005. 4. 1>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변화,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이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이 된 때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현 행	개 정 안
제54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32조 내지 제34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36조(납세의무자등)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6. 7. 14]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삭제>
제1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개정 2005. 4. 1>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세액
1,000씨씨이하	18 원	800씨씨이하	80원
1,600씨씨이하	18 원	1,000씨씨이하	100원
2,000씨씨이하	19 원	1,600씨씨이하	140원
2,500씨씨이하	19 원	2,000씨씨이하	200원
2,500씨씨초과	24 원	2,000씨씨초과	220원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현 행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동차의 연세액

n : 차령(2≤n≤12) <본호 신설 2000. 12. 30>

2. 기타 승용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 원	100,000 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 원	
대형 전세버스	70,000 원	
소형 전세버스	50,000 원	
대형 일반버스	42,000 원	115,000 원
소형 일반버스	25,000 원	65,000 원

4. 화물자동차

적재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 원	28,500 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 원	34,500 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 원	48,000 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 원	63,000 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 원	79,500 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 원	130,500 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 원	157,500 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 원	157,000 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 원	58,500 원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비 영 업 용
3,300 원	18,000 원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개 정 안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0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시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td><td></td></tr>
<tr><td>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이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30>
<table><tr><th>기 분</th><th>기 간</th><th>납 기</th></tr><tr><td>제 1 기분</td><td>1. 1 ~ 6. 30</td><td>6. 16 ~ 6. 30</td></tr><tr><td>제 2 기분</td><td>7. 1 ~ 12. 31</td><td>12. 16 ~ 12. 31</td></tr></table>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4. 7. 16>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td><td><삭제></td></tr>
<tr><td>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td><td><삭제></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 3. 20, 2004. 7. 16> ④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신설 2004. 7. 16> 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3. 20>	
제 3 절의2 주 행 세 <신설 2000. 3. 20>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개정 2008. 1. 4>	<삭제>
제40조의3(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2003. 4. 18, 2004. 7. 16, 2005. 4.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0. 12. 30>	<삭제>
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등) 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 7. 16> ②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삭제>

현 행	개 정 안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2008. 1. 4>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조지서 사본 <개정 2008. 1. 4> ③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96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7. 16>	
제40조의5(특별징수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신설>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1조 내지 제51조 삭제 <삭제 2010.3.12>	
제 5 절 당 배 소 비 세 제52조(과세대상) ①당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당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당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제조당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 당배 다. 제3조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제조당배 3. 냄새맡는 제조당배	제2장 담배소비세 <삭제>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당배에 대하여 당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설 2005. 4. 1>	
[illegible]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삭제>
[illegible]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개정 2006. 7. 14>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개정 2006. 7. 14>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개정 2006. 7. 14> ②삭제 <2006. 7.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신설 2005. 4. 1>	<삭제>
제56조([illegible])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기타 참고사항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illegible]조(제업 마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삭제>
[illegible]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illegible] 및 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6>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을 수입제조 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다른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4. 7. 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6>	<삭제>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7. 16>	<삭제>

현 행	개 정 안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16>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7. 1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담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삭제>
제 6 장 도 축 세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삭제>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결정한다. <개정 2000. 12. 30>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삭제>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삭제>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삭제>
제68조(세액의 결정과 통지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제69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을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삭제>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	<삭제>

현 행	개 정 안
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illegible] 삭제 <2005. 4. 1> 제71조 내지 제82조 삭제 <2005. 4. 1>	<삭제>
제 3 장 목 적 세 [illegible] [illegible]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영 제195조에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조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1. 5. 14]	<삭제>
[illegible]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05. 4. 1]	<삭제>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사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 4. 1>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신설 2005. 4. 1>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삭제>
제8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	<삭제>

현 행	개 정 안
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	
제[illegible](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4. 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삭제>
제[illegible](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2. 재개발사업지구 3.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지구	<삭제>
제[illegible](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삭제>
제[illegible](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6. 7. 14>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4. 1]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5. 4. 1, 2009.5.29>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 4. 1>	<삭제>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4. 1>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4. 1>	<삭제>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4. 1>	<삭제>
제95조 내지 제100조 삭제 <삭제 2010.3.12>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함께하는 충북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27(2010. 9. 28)호의 이첩입니다.

2. 종전 지방세법이,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공포(법률 제10219~10221호, 2011.1.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지방세 기본조례 및 동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지방세 조례 및 동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을 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금년말까지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2011. 1. 1부터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조례 및 규칙 정비계획 1부.
2. 자치단체별 지방세 기본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표준안 각 1부.
3. 자치단체별 지방세 조례 및 부과징수규칙 표준안 각 1부. 끝.

충청북도지사

수신자 청주시장(세정과장),충주시장(세정과장),제천시장(세정과장),청원군수(재무과장),보은군수(재무과장),옥천군수(세정과장),영동군수(재무과장),증평군수(재무과장),진천군수(재무과장),괴산군수(재무과장),음성군수(재무과장),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2699 (2010.09.29.) 접수 세정과-16738 (2010.09.29.)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 220-2753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 / 공개

'10.9.28(화) 지방세정책과 김상춘 사무관 (행3916, 010-2518-5375)

지방세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정비 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

○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추진

※ **(추진사항) 조례 축조작업을 위한 자치단체 워크숍 실시**(1차: '09.5월, 2차: '10.7월), **조례 및 규칙 표준안 마련 및 의견수렴**('10.9.10)

□□ 지방세 분법 개요

○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분법

현행 (1개법)		분법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17개세목	➡ 지방세법 (전부개정) ※11개세목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 지방세법은 복잡한 세목을 대폭 간소화함 (16개 세목→11개세목)

구 분	현행 : 17개 세목		분법 :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① 취득세
	③ 재산세 ④ 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통합	② 등록세(취득무관 및 정액분) ⑤ 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 공동시설세 ⑦ 지역개발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 자동차세 ⑨ 주행세		⑤ 자동차세
현행유지 ⇒ 소득소비세도입	⑩ 주민세 ⑪ 사업소세		⑥ 주민세 ⑦ 사업소세
	⑫ 담배소비세 ⑬ 레저세 ⑭ 지방소비세		⑧ 담배소비세 ⑨ 레저세 ⑩ 지방소비세
폐 지	⑮ 도축세		폐지
목적세	⑯ 지방교육세		⑪ 지방교육세

Ⅱ 지방세 조례 정비방향

□□ 기본방향

○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지방세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조례**로 규정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표준안에 반영**

현 행	예 정 ('11년)
지방세 조례/부과징수규칙	지방세 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 (제정)
	지방세 조례/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 표준조례안 구성

○ **(대상조례)** 지방세 기본조례 및 동 부과징수규칙, 지방세조례 및 동 부과징수규칙

※ 특별·광역시 / 자치구/ 도 / 시·군별 분류(16종)

○ **(조례편제)** 지방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편제순서에 따르되, 세목별 편제도 과세표준 및 세율, 부과징수로 구분하여 지방세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구성

○ **(조문정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

Ⅲ 주요 제·개정 내용

□□ 지방세기본조례 및 규칙

① 자치단체별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

○ **세목 귀속체계 재편**(등록면허세 및 도시계획세 등) 및 폐지된 세목(도축세, 농업소득세)을 반영하여 재편성

1) 특·광역시세
- **(변 경)** 등록세 → 취득세(취득 유관분), 등록면허세(취득 무관분)
- **(폐 지)** 도축세, 농업소득세

2) 도세
- **(변 경)** 취득세(취득 유관분), 등록면허세(취득 무관분)

3) 시·군세
- **(폐 지)** 도축세, 농업소득세

4) 자치구세
- **(변 경)** 등록세, 면허세 → 등록면허세, 도시계획세 → 재산세(특별시 제외)

② 지방세에 관한 총칙규정 정비

○ 지방세 조례에서 *이관된 지방세에 관한 통칙규정을 반영

*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료, 대장내역 전산작성 사항 등

○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총 29개 조문)**

③ 법령의 인용규정 및 서식정비

○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 지방세 조례 및 규칙

①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 체계에 맞추어 정비

○ 세목간소화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정비**

* (통합) 취득세, 재산세 (폐지) 농업소득세, 도축세

② 지방세 조례의 비과세 규정 정비

○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 폐지

* (例) (취득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토지수용에 의한 대체취득 등
(재산세) 제사·종교·학술 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재산

③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

* (例) **(취득세)** 세율(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세율 반영), **(재산세)**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특례(법제112조 제1항 제2호) 세율개정

○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 조문 폐지

* (例) (면허세) 관허사업제한 취소 또는 정지 등, (자동차세)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

④ 법령의 인용규정 및 서식정비

○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Ⅳ 자치단체 협조사항

□□ 조례개정 시한 준수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개회 시 지방세 기본조례 및 지방세 조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10. 12. 31까지 완료)

※ 지방의회 입법절차, 의회설명자료 등 철저히 준비

□□ 부과징수규칙 개정

○ 지방자치단체는 부과징수규칙을 기한 내 개정추진

□□ 기타 협조 사항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기한 내 개정토록 조치

○ 기타 조례개정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우리부로 즉시 동향보고**

Ⅴ 향후 추진일정

○ 기본조례 및 조례 표준안 확정 및 지방자치단체 시달 : '10.9.28.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개정('11.1.1.시행) : '10.12.31.까지

00시(군) 시(군)세 조례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 「00시(군) 시(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00 시(군) 시(군)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 따라 장부비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	(500,000)원

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 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의 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25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00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세율은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세율의 50% 범위 내 조정 가능(해당 연도에만 적용)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0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0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0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00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	18원	8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0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각 세율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관련근거	조 례 내 용	조 치 내 용
담당자 의견	제8조(신고의무) ①(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	도세조례 입법예고(10.22)시 관련조항 삭제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

제천시 공고 제2010 - 1102호

제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제천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 일

제 천 시 장 (인)

1. 조 례 명 : 제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을 3개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

○ **'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지방세 조례 및 규칙 제·개정

3. 주요내용

①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 체계에 맞추어 정비

○ 세목간소화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정비**

* (통합) 취득세, 재산세 (폐지) 농업소득세, 도축세

② 지방세 조례의 비과세 규정 정비

○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지방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 폐지

* (例) (취득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토지수용에 의한 대체취득 등
(재산세) 제사·종교·학술 등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는 재산

③ 부과징수 규정 재편성

○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

* (例) **(취득세)** 세율(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세율 반영), **(재산세)**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특례(법제112조 제1항 제2호) 세율개정

○ **법령에서 삭제된 조문 및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 등 조문 폐지

* (例) (면허세) 관허사업제한 취소 또는 정지 등, (자동차세)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세) 납세관리인 지정

④ 법령의 인용규정 및 서식정비

○ 지방세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폐지된 서식 등 정비

4. 개정근거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27(2010.9.28)호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 통보」

5. 개 정 안 : 별지참조

6. 입법예고 : 2010. 10. 08 ~ 2010. 10. 28(20일간)

7. 제출의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564, FAX 641 - 5599 담당자 : 엄 복 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실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엄복철	유흥열	10/29 반명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예고 조례 : **제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10-1102호
3. 공고기간 : 2010. 10. 8. - 10. 28.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
5. 공고내용 : 붙임
6. 공고결과
   - ○ 조회수 : 30명
   -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공고안 1부. 끝.